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2020. 2. 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0-5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0년 1월 21일(화)
- 라. 회부일자: 2020년 1월 22일(수)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당구장을 추가하고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 사용이 가능한 사용료 범위, 대상별(장애인, 어르신, 여성, 청소년) 당구대회 개최 장소 활용을 위한 사용료 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당구장 추가(안 제3조 및 별표 1)
- 나. 개인 사용료 범위에 당구장 추가(안 제8조 및 별표 2)
- 다. 전용 사용료 범위에 당구장 추가(안 제8조 및 별표 3)
- 라.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염리생활체육관, 마포구민 체육센터, 와우산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총 6곳의 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마포농수산물센터 내에 성산 당구장을 새로이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지하다시피 당구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국민 스포츠이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포츠 종목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생활 속 대중 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산 당구장의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사회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성산 당구장을 추가하였고,

○ 조례 제8조 관련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개정하여 당구장의 개인 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19년 12월 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산 당구장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음.

- 또한, 행정규제 사전심사 결과 본 조례안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 비고란에 성산 당구장은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한정된 시설에 비해 사용자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당구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관 계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67호, 2018. 9. 18., 일부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25호, 2019. 1. 15., 일부개정]

-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